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귀책구조

이 승 우*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II.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법리의 체계
- III.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귀책요건
- IV. 사업자의 연대책임
- V. 인과관계
- VI. 손해배상범위와 소멸시효
- VII. 결어

[국문초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인자의 책임은 고도의 기술발달로 인한 시설, 에너지원의 위험을 그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시설 또는 유체적 위험원의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책임으로 과실책임과 대비된다. 위험책임에 의하면 시설의 가동 또는 물건의 점유와 결합된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 시설보유자, 물건점유자가 과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귀책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책임법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귀책원리에 따라 독자의 과제영역을 규율하는 책임유형으로써 책임법상 과실책임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I. 문제의 제기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의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¹⁾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의 유형과 내용은 다양하다.²⁾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의한 방해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³⁾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환경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⁴⁾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손해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의해 과실책임⁵⁾을 지게 되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에 의하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설비를 통한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그 책임을 단지 인간의 과실에만 귀속시킬 수 없고 당해 시설 자체에 내재하는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과실론에 의한 해결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한계를 넘어 위험책임법리에 따라 귀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험책임의 위험은 불특정 법익의 불확실한 침해에 대한 추상적 위험으로써 처음부터 침해행위의 위법성과 행위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이른바 허용된 위험이다.⁶⁾ 이 위험책임은 이러한 위험원을 지배하는 자, 즉 오염자기자에게

1) Günter Hager, *Der Vorschlag einer europäischen Richtlinie zur Umwelthaftung*, JZ 2002, 901(902). 환경(Umwelt)이라 함은 생태계(biologische Vielfalt), 하천(Gewässer), 토양(Boden), 지하(Unterboden) 등을 말한다(유럽환경책임지침 RiL 79/409/EWG v. 2. 4. 1979, RiL 92/43/EWG v. 21. 5. 1992-자연생태공간의 보존과 야생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규정).

2) 박원선, 「공해와 법적 규제」, 대한민국 학술원 공해문제연구회, 1971, 14면.

3) Rehinder, *Towards a Community Liability Regime: The Commission's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Liability*, 3. Env. Liability, 2000, 85 f.

4) Rabel, *Die Grundzüge des Rechts der unerlaubten Handlungen*, in: *Deutsche Landesreferate zum 1. Internationalen Kongreß für Rechtsvergleichung*, 1932, S. 13; v. Liszt, *Die Deliktsobligationen*, 1898, S. 21.

5) 권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663면, 685면-686; 김증한, 「채권각론(민법강의IV)」, 박영사, 1989, 458면; 이명갑, 「과실개념에 대한 판례, 학설의 진전과 변용」, 「대한변호사협회지」, 1987. 9, 51면;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법조」, 제52권 제8호(통권 제563호), 2003. 8, 52면, 62면; 정기웅, 「불법행위법상 과실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법조」, 제34권 제3호, 1985. 2, 58면; 황적인, 「현대민법론 IV」, 박영사, 1987, 357면.

그 위험원인 사업장이나 그 운영으로부터 손해를 발생시켜 지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⁷⁾

그 동안 입법상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과실책임원칙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였다.⁸⁾ 구체적으로 무과실책임을 과실책임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⁹⁾, 제한하여 왔다.¹⁰⁾ 이러한 규정들은 일본 소화 47년 「대기오염방지법 및 수질오염방지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기오염방지법 제25조와 수질오염방지법 제19조 그리고 독일 환경책임법의 무과실책임법리를 도입한 것이다.¹¹⁾ 이하에서는 환경위험책임의 귀책 기반과 그 위험책임법리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법리의 체계

1.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구성

(1) 위험책임의 책임내용과 귀책구조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은 과실책임과 달리 복잡한 시설 구조 그리고 그 시설

6) Esser, *Grundlagen und Entwicklung der Gefährdungshaftungen*, 1941, S. 90 f. ; v. Caemmerer, *Reform der Gefährdungshaftung*, 1971, S. 15; Deutsch, *Allgemeines Haftungsrecht*, 2. Aufl., 1995, Rdnr. 214 ff.

7) 김형배, “위험책임론”,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민법전 시행 30주년 기념논문집, 1993, 773면 이하 참조.

8) 이동기, 전게논문, 52면; 大石武一 環境廳長官説明・衆議院會議錄 21号, 587頁; 衆議院特別委員會會議錄 26号, 18頁; 船後正道, 「逐條解説 公害に係る無過失損害賠償責任法—大氣汚染防止法及び水質汚濁防止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帝國地方行政學會, 1972, 73頁, 90頁.

9) 船後正道政府委員説明・衆議院特別委員會會議錄, 26号, 18頁; 船後正道, 前掲書, 99頁.

10) 古館清吾説明員説明・衆議院特別委員會會議錄, 14号, 2頁; 衆議院特別委員會會議錄, 21号, 8頁; 船後正道・衆議院特別委員會會議錄, 24号, 10頁.

11) 橋本佳幸, 責任法の多元的構造, 東京: 有備閣, 2006, 274頁. 일본법상 환경위험에 관련된 무과실책임 입법으로서 이외에 광업법 제109조 이하(소화 25년 제정),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소화 36년 제정) 등이 있지만 그 적용이 제한되어 있다. 공해무과실책임은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대기오염방지법과 수질오염방지법에 적용되고 있다.

의 기능 불완전으로 외부원인의 개입에 따른 통제할 수 없는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을 규율한다. 환경위험원의 보유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그 위험원을 지배하므로 이러한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적극적·구체적 내실을 갖춘 위험책임은 독자적 귀책구조 하에서 규율하는 책임원리로서 책임법상 과실책임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환경위험원에 의한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은 행위의무로써 각종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환경을 침해하게 되어 구조상 과실책임으로는 불충분하게 된다. 이러한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과실여부나 제한가능성 유무를 묻지 않고 보증책임의 도입이 요청된다. 위험책임은 자신의 신체 이외에 지배영역을 확대하여 환경위험원을 보유하는 자에게 당해 위험원의 이러한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과실책임은 자기의 신체, 행위에 한해서 보장된다.

(2) 제어 불가능한 환경위험에 대한 위험책임

위험책임의 전통적 규율대상에 비해 독자성이 있고 위험원인 오염물질에 의한 제어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위험은 위험책임영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어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위험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은 시설의 기능불완전과 외부원인의 개입 등으로 예정 외 다량 유출되어 직접적으로 환경을 침해하고, 시설의 기술성, 복잡성 내지 물질강도로 인해 각종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위험을 유발하게 한다. 시설의 가동장애에 의한 간접적 침해에 따른 제어 불가능한 환경위험으로써 소량으로 계속 방출된 상당량의 오염물질은 환경이나 인체 내에 장기간 누적되거나 다른 오염원과 복합되어 환경을 침해하는 바, 방출 후 오염물질에 의한 침해과정은 방출물질에 관한 미지의 위험 및 다수 인자의 관여에 의한 예측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사를 지연시키기도 하여 사전예측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환경위험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구체적 내실을 갖춘 위험책임에 그 귀책론적 기반을 둘 수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은 과실책임에 의하지 않고 예외적 책임이라는 소극성을 초월하여 적극적 귀책근거로부터 위험책임을 재구성할 수 있다.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무과실책임

(1) 독일법

1991년의 독일의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제1조¹²⁾에 의하면 환경침해의 대상은 재산권, 생명, 신체, 건강, 그리고 개별적인 기타 법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³⁾ 이 법 제1조는 인과관계책임(Kausalhaftung)과 무과실책임(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¹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환경침해로 인해 필수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¹⁵⁾ 책임(ver)환경오염의 경우, 법에 의한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rechtsmäßigen Normalbetrieb)에 따른 인과관계에 의한 귀책여부가 문제이다.¹⁶⁾ 기본적으로 법에 따른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에 따른 결과는 면책된다.¹⁷⁾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유형으로써 위험책임은 위험물 관리자에게 절대적으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¹⁸⁾ 무과실책임의 원인은 특별한 위험원의 생성¹⁹⁾에 의하므로, 시설의 가동에 따른 손해를 무과실책임에 의한 위험책임으로 귀책시키고 있다.²⁰⁾ 시

12)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환경작용으로 인한 시설책임) 부록1에 제시된 시설의 환경작용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와 건강이 침해되고 물건이 손상되면 시설의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3) Larenz, *Schuldrecht II*, §77 IX; Medicus, *Schuldrecht II*, §148 II.

14) Rehbinder, *Fortentwicklung des Umwelthaftungsrechts, Natur&Recht* 89, 161 ff.; Schulte JZ 1988, 278; Diederichsen, *Bitburger Gespräche*, Jahrbuch 1989, 70 f.; Landsberg-Lülling, *UmweltHR*, 1991, §1 Rdnr. 117.

15) 환경침해손해에 있어서 결과책임(Erfolgshaftung) 이론은 Mauczka, *Der Rechtsgrund des Schadensersatzes außerhalb bestehender Schuldverhältnisse*, 1904, 142 ff.; Adler, *Unverschuldetes Unrecht*, 1910, 19; Marton, *AcP* 162, 1 ff.

16) Rehbinder, a. a. O., S. 155 f.; Diederichsen, a. a. O., S. 71 ff.

17) Rehbinder, *Towards a Community Liability Regime: The Commission's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Liability*, 3. *Env. Liability*, 2000, 85, 87.

18) 이동기, 전제논문, 67면-68면.

19) v. Caemmerer, *Reform der Gefährdungshaftung*, 42, 15=Gesammelte Schriften, Band III, 1983, 239, 249; Kötz/Wagner, *Deliktsrecht*, 9. Auflage, 2001, Rdnr. 341.

20) Enneccerus/Lehmann, *Schuldrecht*, §230 II; Larenz, *Schuldrecht II*, §77 I; Oftinger, *Schweizerisches HaftpflichtR I*, 16 f.; Schäfer/Ott, *Lehrbuch des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2.

설소유자가 귀책되는 것은 위험의 지배(Beherrschung des Risikos), 손해부담의 정도, 위험으로부터 수익, 그가 수인할 수 있는 위험물과 시설가동의 조건성 때문이다.²¹⁾ 시설가동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혹은 물건을 침해함으로써 인하여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행위자의 과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²²⁾ 시설가동은 환경오염의 조건이 된다.²³⁾ 개연성에 의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가치 판단은 요구되지 않는다.²⁴⁾ 법익침해는 환경책임의 현실적인 위험을 존재케 한다. 독일환경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손해(Schaden)는 환경작용에 의해 일정요건을 충족시킬 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물의 침해가 물질, 진동, 소음, 압력, 광선, 가스, 증기, 열 혹은 토양, 공기, 물에 확산된 기타 현상에 의해 발생되지 않으면 귀책되지 않는다.

(2) 일본법

일본법은 대기오염방지법 제25조²⁵⁾와 수질오염방지법 제19조²⁶⁾가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²⁷⁾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중요성에 관해서 학계는 입법론적으로 많이 검토

Auflage, 1995, 171 f.

21) Mataya, *Das Recht des Schadensersatzes vom Standpunkt der Nationalökonomie*, 1988; Bienenfeld, *Die Haftung ohne Verschulden*, 1933, 29 ff.; Larenz, JuS 1965, 374; M. Rümelin, *Schadensersatz ohne Verschulden*, 1910, 30, 46; v. Caemmerer, *Reform der Gefährdungshaftung*, 1971, 15; Esser, *Grundlage und Entwicklung der Gefährdungshaftung*, 1969, VI.

22) 이동기, 전게논문, 68면.

23) Larenz, *Schuldrecht I*, §27 Abs. 3; Hart&Honore, *Causation in the law*, 62 ff.; vgl. Engisch, *Die Kausalität als Merkmal strafrechtlicher Tatbestände*, 1931, 29.

24) BGHZ 79, 259=JZ 1981, 314; Traeger, *Der Kausalbegriff im Straf- und Zivilrecht*, 1904, 305.

25) 일본 대기오염방지법 제25조(무과실책임) 제1항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건강 피해물질(연기, 특정물질 또는 분진, 생활환경에 관련되어 피해를 발생시키는 물질로서 법령에 정한 것 이외의 것)이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때, 당해 배출에 관련된 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6) 일본 수질오염법 제19조(무과실책임) 제1항 공장 또는 사업장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된 물 또는 폐액이 함유된 상태로 배출은 지하로의 침투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때 당해 배출과 지하의 침투에 관련된 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7) 橋本佳幸, 前掲書, 274頁.

했었다. 그러나 검토시에 피해의 중대성에 의한 구제의 필요성, 긴급성 내지 피해구제의 촉진, 충실이라는 점에 기준을 두었다.²⁸⁾ 牛山교수에 의하면 환경오염사건에 있어서 사업자의 연구조사 의무, 방지조치의무가 과실없이 지연되었다면 피해발생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은 실질적으로 과실책임주의와 다른 책임원리에 기해서 과실없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의한 과실입증 없이 재판을 신속히 하는 점에서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富井교수에 의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무과실책임은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증명이 불필요한'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무과실책임은 결코 과실책임의 테두리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많은 환경오염사건에서 누군가의 과실을 긍정한다 해도 특별환경위험의 내용으로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무과실책임의 대상인 환경위험에는 각종 안전조치(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가해의 유형) 내지 사전조사연구(정상가동, 가동장애에 의한 간접적 가해유형)를 지연해도 제어할 수 없어서 과실을 논의할 수 없는 영역이 남아 있다. 한편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구성요건)의 궁극적 의의는 이들 과실을 말할 수 없는 환경위험책임(과실이 필요하지 않은 무과실책임)이 존재한다.²⁹⁾

(3) 우리나라법

법원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민법 제750조 이하의 일반불법행위 규정보다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특별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³⁰⁾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

28) 公害法研究會, 公害事業者責任法の提案, *ジュリ* 494号, 1971, 88頁-89頁; 加藤一郎,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 *現代法 ジャーナル* 創刊号, 1972, 17頁 以下; 淡路剛久,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 公害賠償の理論, 有斐閣, 增補版, 1978, 166頁 以下; 澤井裕,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について, 西原道雄 外編, *現代損害賠償法講座 5 公害·生活妨害*, 日本評論社, 1973, 65頁 以下.

29) 牛山積,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法案要綱の問題點, *公害裁判の展開と法理論*, 日本評論社, 1976, 89頁-90頁; *現代の妨害法*, 78頁 以下, 勁草書房, 第2版, 1991; 富井利安, 無過失責任論の沿革と公害賠償責任法, *公害賠償責任の研究*, 101頁-110頁, 日本評論社, 1986; 吉村良一, *不法行爲法*, 14頁-15頁, 有斐閣, 第3版, 2005.

3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판결.

염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³¹⁾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덤프트럭 등을 집중 투입하여 양식장 앞의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양식장 앞 도로를 통하여 대량 운반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인근 양식장의 승어가 폐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업장인 위 토사반출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³²⁾ 한편 대법원 99다55434판결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양돈업에 대한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³³⁾ 그리고 최근 대법원 2006다50338판결은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의 영향으로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건물에는 대지 지반의 부동침하, 건물 변위(기울어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다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장의 사업자인 피고 1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신축공사장에서 시공된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의 지반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주변 토지의 침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⁴⁾

31) 박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781면; 임정평,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고찰”, 「법정고시」, 1997. 9. 6면; 「채권각론」, 법지사, 1995, 762면;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47면.

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판결.

33)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판결.

3.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³⁵⁾ 무과실책임의 근거로서 위험책임이 있는 바, 위험책임은 자기를 위해 타인을 위험상태에 빠지게 하는 자는 그 위험상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³⁶⁾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동등성을 확립한 후에 일반 위험책임론에 따라 구성된 독일법과 일본법의 위험책임론³⁷⁾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법은 무과실책임론의 발전이 더디어 그 귀책론적 체계화가 늦게 시작되었다. 그 동안 학설은 종래 고전적인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에 의한 위험책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즉 위험한 기업시설 등 위험성 높은 기업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확대하여 왔다.³⁸⁾

우리나라 법상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규정으로는 1969년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1990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1992년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등이 있다.

3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판결.

35) 박운직, 전계서, 781면; 임정평, 전계논문, 6면; 전계서, 762면; 최상호, 전계서, 47면.

36) Larenz, VersR 1963, 599 ff. ; Baur, JZ 1964, 354 f. ; v. Caemmerer, *Reform der Gefährdungshaftung*, 42, 15=Gesammelte Schriften, Band III, 1983, 239, 249; Kötz/Wagner, *Deliktsrecht*, 9. Auflage, 2001, Rdnr. 341; 船後正道, 前掲書, 95頁; 衆議院特別委員會議錄, 16号, 3頁.

37) 浦川道太郎, 無過失損害賠償責任, 星野英一 外編, 民法講座 6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有斐閣, 1986, 191頁.

38) 加藤一郎, 不法行爲, 增補版, 有斐閣, 1985, 19頁-23頁; 四宮和夫, 不法行爲, 青林書院, 1983, 1985, 255頁-156頁, 258頁-260頁; 浦川道太郎, 「ドイツにおける危険責任の發展(1)-(3)」, 1974, 民商70卷 3号 458頁, 4号 601頁, 5号 773頁. 독일의 위험책임론을 소개하면서 위험책임이라는 귀책원인의 고유의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손해배상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錦織成史, 不可抗力と避けることのできない外的事實-危険責任の免責事由に關する一考察, 論叢, 1982, 110卷 4, 5, 6号 200頁. 위험책임이라는 귀책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차원(위험책임구성요건의 해석 내지 입법적 제언)으로까지 반영시켰다. 무과실책임일반에 대해서 선행연구의 방향성을 수계하고 환경위험책임을 소재로 하여 위험책임론의 진전을 도모했다.

Ⅲ.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귀책요건

이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을 그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를 기준으로 기타 관련 특별법의 주요 성립요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유해물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은 건강피해물질로 매연, 특정대기유해물질³⁹⁾, 입자상물질⁴⁰⁾ 등이다.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하여 기업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해야 한다. 환경손해와 관련하여 특별환경위험은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가해의 유형에 따라 보유과정상 오염물질에 존재하거나, 정상가동이나 가동장해에 의한 간접적 가해의 유형에 따라 소량으로 계속 방출되어 누적된 오염물질에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위하여 일반적, 포괄적으로 정형화하여 특별환경위험을 내포한 오염물질을 그 규율대상으로 할 수 있다.⁴¹⁾ 예를 들면 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환경매체의 오염으로 인해 가해위험이 있는 물질」이라고 정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의 판단은 물질의 유해성 유무만이 아니라 물질의 양과 강도의 작용유무를 고려해야 하고, 환경오염을 개입시킨 위험의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염물질에 있어서 특별환경위험의 내용은 상당량의 오염물질의 존재(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가해유형) 내지 소량의 오염물질의 계속적 방출로 인해 누적되어 상당량에 이를 것(정상가동, 가동장해에 의한 간접적 가해유형)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량의 안정적인

39) 일본대기오염방지법 제17조에 의해 특정물질은 물의 합성, 분해 기타 화학적 처리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물질로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계속되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일본의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암모니아, 불화수소, 시안화수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인화수소, 염화수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염소, 벤젠, 불화규소, 황린, 퀴소, 염화인등이 제시되어 있다.

40) 일본대기오염방지법 제2조 제4항에 의해 분진은 물의 분쇄, 선별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퇴적되어 발생하거나 비산하는 물질이다.

41) 加藤一郎, 前掲論文, 17頁. 공해의 실태는 연속되고 단지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과실책임이 원인물질을 한정할 경우에도 연속성과 양적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유추해석될 수 있다.

유해물질의 보유와 단지 일회적인 소량방출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⁴²⁾ 한편 방출 당시 아직 유해성을 알 수 없는 물질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해물질 판단은 방출 후에 판명된 물질의 성질을 기초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상 가동이나 가동장애에 의한 간접적 가해의 유형에 있어서 특별환경위험은 방출물질의 장래의 만성적, 복합적 가해의 위험(장래위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책임이 적용되는 그 대표적인 유해물질로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에 의한 '핵연료물질', 토양환경보존법 제10조의 3의 '오염된 토양',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 등이다.

2. 사업장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사업장」이란 물건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장소이다.⁴³⁾ 그러므로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과 자가용으로부터 배출되는 가스 등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제외된다.⁴⁴⁾ 여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위험성이 적어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경작지와 목장, 어장 그리고 해양폐기물처리장 등은 경영규모와 내용상 사업장이 아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분을 위한 매립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동법에서 자동차, 선박 등의 이동발생원도 원인자의 특징이 쉽지 않고, 배출가스가 극히 미량이므로 위법성이 없어서 가스배출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한편 사업장은 사업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작지와 목장, 어장 등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자가용은 사업성을 흠결하고, 자동차와 선박은 고정성을 흠결하여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성과 고정성을 갖춘 시설로 제한된다.⁴⁵⁾

42) 船後正道, 逐條解説 公害に係る無過失損害賠償責任法—大氣汚染防止法及び水質汚濁防止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帝國地方行政學會, 1972, 114頁. 비록 그렇다고 해서 공해무과실책임의 보호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배출량이 극히 적어서 위법성이 흠결된 경우도 있다.

43) 船後正道, 前掲書, 96頁, 154頁.

44) 船後正道, 前掲書, 96頁—97頁, 154頁—155頁; 參議院特別委員會會議錄, 9号, 7頁; 古館清吾說明員說明衆議院特別委員會會議錄, 13号, 9頁.

45) 독일 환경책임법 제3조 제2항은 시설을 토지에 고정된 설비라고 한다. 또한 동법에 첨부되어 있는 표 1에 제시된 시설목록에는 사업시설에 해당하고 소규모 농업과 자가용, 가정난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와 제5조는 시설 및 행위책임에 입각해서 그 책임당사자로서 사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⁴⁶⁾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 의해 사업장과 더불어 사업자가 포함되어 환경책임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서 그 만큼 잠재적 피해자에게는 유리한 장점이 있다.⁴⁷⁾ 한편 직접적 가해의 유형에 있어서 오염물질이 환경 속으로 다량 유출되는 특별환경위험은 시설에 의한 위험과 마찬가지로 시설 이외의 위험도 포함된다. 정상가동·가동장해에 의한 간접적 가해의 유형도 소량으로 계속 방출된 오염물질이 환경 속으로 점차 누적되어 환경을 침해한 특별환경위험은 시설로부터 물질방출과 시설 이외로부터 물질방출 및 그 내용과 정도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상 인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인 시설로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에 의한 '원자로', 토양환경보존법 제10조의 3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그리고 고정성의 예외로 유류의 다량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유조선' 등이다.

3. 오염물질의 배출

다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성립요건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의한 물질의 대기 중으로 배출에는 사업장의 정상가동에 의한 계획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사고, 가동장해에 의한 예정 외의 오염물질의 배출도 포함된다. 그 대상은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일정한 토양오염 등으로 한정된다.⁴⁸⁾ 한편 고의, 과실의

46) 윤용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 제1호, 1994, 74면; Deutsch, Karlsruhe Forum 1967, 5 f.; *Haftungsrecht I*, 1976, 384; VersR 1971, 2 ff.; Kötz, AcP 170, 19 f.; Feldmann, *Umwelthaftung aus umweltpolitischer Sicht*, URP 1991, 48; Schmidt-Salzer, *Das UmwelthaftungsG*, 1991, VersR 1991, 9 ff.

47) 윤용석, 전제논문, 75면; 최상호, 전제서, 47면.

48) 大石, 衆議院特別委員會議錄, 13号, 4頁; 參議院特別委員會議錄, 10号, 14頁; 船後正道, 前掲書, 54頁, 90頁; 赤倉啓之=太田義武, 『解説 公害の無過失責任』, 第一法規出版, 1972, 37頁. 공장매연에 포함된 카드뮴에 의한 농지오염을 예시했다. 토양오염이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오염된 물 또는 폐수가 포함된 상태로.... 지하로의 침투」요건에 의해 파악된다..

입증이 용이하므로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는 과실책임이어야 한다고 하나⁴⁹⁾, 소송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⁵⁰⁾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⁵¹⁾ 판례는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있다.⁵²⁾

환경위험책임을 위한 요건은 오염물질의 대기 중의 방출이라는 침해작용이 있어야 한다. 환경위험책임은 특별환경위험의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바, 점차적, 집합적 기해의 위험 및 사전예측의 한계로서 특별환경위험은 오염물질 내지 오염물질방출에 의한 침해과정상 특유의 사정인 오염물질의 환경잔류, 누적 및 장거리 도달성, 침해 경로의 복잡성, 다양성 및 다른 인자 등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환경위험책임으로써 재구성된 공해무과실책임을 위해서는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방출이라는 침해작용 요건을 갖추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이 오염된 물 또는 폐수가 포함된 상태로 배출 또는 지하로의 침투라면⁵³⁾, 토양면에 농약, 화학비료를 살포하는 경우와 오염물질을 그대로 토양 중에 매립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을지 의문이나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위험책임이 적용되는 관련 규정으로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에 의한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 토양환경보존법 제10조의 3의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 등이다.

4. 당해 사업자

책임주체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당해 (배출에 관련된) 사업

49) 小澤, 船後政府委員説明, 參議院特別委員會會議錄, 26号, 28頁-29頁.

50) 淡路剛久,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 公害賠償の理論, 有斐閣, 增補版, 1978, 167頁.

51) 加藤一郎,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 現代法 ジャーナル創刊号, 1972, 14頁; 牛山積,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法案要綱の問題點, 公害裁判の展開と法理論, 日本評論社, 1976, 89頁.

52)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53) 실제로 야적된 철광석쓰레기의 지하로의 침전, 폐기물최종처리장으로부터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침전된 물, 공장, 사업장 부지의 화학물질, 중금속의 누설, 용출 등, 오염물질이 토양 중으로 방출된 경우는 「오염된 물 또는 폐수가 포함된 상태로 배출 또는 지하로의 침투」에 해당된다.

자」요건은 오염물질과의 관계(건강피해물질의 대기 중으로 배출 관련성)를 책임주체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결정기준은 사업장에 종업원이 종사하므로 사업자에 의한 물질의 배출행위를 묻는 것은 아니다. 한편 오염물질과 관련해서 「배출에 관련된」이라는 내용이 흠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행위를 행하는 종업원과의 구별을 위해서라도 「당해 배출을 행한 사업자」로 해야 한다.⁵⁴⁾

오염물질이 환경 속으로 다량 유출됨으로 인한 특별환경위험은 오염물질을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보유자에게 있다. 또한 정상가동, 가동장애에 의한 간접적 침해유형에서 소량으로 계속 방출된 오염물질이 누적된 특별환경위험은 방출 후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바 오염물질 방출시 그 보유자인 방출자에게 있다. 결과적으로 오염물질의 방출시점에 그 보유자가 책임주체가 된다.⁵⁵⁾ 예를 들어 제3자의 실화로 인해 화학공장의 저장탱크로부터 화학물질이 다량 유출된 경우 공해무과실책임의 책임주체는 당해 배출에 관련된 제3자와 화학물질보유자인 화학공장이다. 한편 공장가동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이 최종처리장에서 유출된 경우 책임주체는 폐기물발생공장과 유출당시 폐기물처리장이다.⁵⁶⁾ 위험책임이 적용되는 그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에 의한 '원자력사업자', 토양환경보존법 제10조의 3의 '오염원인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등이다.

54) 船後正道, 前掲書, 106頁. 종업원에 의한 배출행위가 사업조직상 전체적 활동의 테두리 내에 포함된 모든 경우에 미친다(전기공사사업자의 피용자에 의한 실화). 한편 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의사의 관여 없이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대형사고, 조업장애의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화학공장, 최종처리장).

55) 船後正道, 前掲書, 98頁. 오염물질이 다양하게 방출된다면, 그 공해무과실책임의 책임주체의 결정기준은 정치하고 다양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장배수가 하수도를 통해서 하천으로 배출되는 경우, 하수도관리자의 책임 이외에 공장이 공동책임을 지야한다. 또한 도로를 주행하는 다수의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해서 대기오염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판례는 영조물책임과 도로건설 및 관리자인 도로공단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사실적 지배 이외의 것도 책임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책임주체의 존재를 「환경 속으로 방출시 오염물질의 보유자」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건유형은 사실적 지배의 이전에 의한 책임주체의 변동에 관한 특수문제 내지 오염물질의 사실적 지배라는 범위를 초월한 책임주체의 확장으로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6) 폐기물에 의한 환경손해에 관해서 폐기물발생공장이 공해무과실책임을 진다. 그러나 폐기물이 최종처리장으로 반입된 경우 폐기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최종처리장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최종처리장이 책임주체가 된다. 예외적으로 최종처리장이 무허가이거나 발생공장이 폐기물을 변질시킨 경우 발생공장이 책임을 진다.

IV. 사업자의 연대책임

1. 복수사업자의 연대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각 사업자는 연대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⁵⁸⁾ 첫째, 환경오염은 존재하나 누구에 의해서 오염이 발생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경우 복수의 사업자 중에서 누군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것까지 증명하여야 면책될 수 있다.⁵⁹⁾ 둘째, 복수 사업장의 오염물질이 집적되어 손해가 발생한 복합오염피해의 경우 비록 각 사업장은 단독으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할지라도 면책되지 않는다.⁶⁰⁾ 복합오염피해의 경우 주관적 가해의사가 필요치 않으며 모든 사업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⁶¹⁾ 각 사업자의 내부적 부담은 각자의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관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⁶²⁾ 독일법상 입법자는 독일환경책임법 제7조⁶³⁾ 제1항에서 복수인과관계의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일반규정을 두었다. 환경오염으로 손해를 야기시킨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복수인과관계 책임을 진다. 또한 다수 사업장이 가동되어 환경오염물질을 방출하여 누적시켜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각 사업장은 연대책무를 부담한다.

57) 임정평,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해에 대한 소고”, 안이준 박사 회갑논문집, 박영사, 1986, 539면 이하.

58) 김형배, 「채권각론(민법오점강의 IV)」, 신조사, 1996, 748면.

59)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716면; 반대설-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750면.

60) 이은영, 「민법학강의」, 박영사, 1995, 960면; 김주수, 전계서, 750면.

61) 대법원 1991. 10. 20. 선고, 90다20244 판결.

62) 김형배, 전계서, 748면; 이은영, 전계서, 960면.

63) 독일환경책임법 제7조(추정의 배제) 제1항 개별사례의 환경침해 사정이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할 때, 복수의 사업장이 손해발생에 적합하다면 추정은 효력이 없다. 개별사례의 손해발생적합성은 손해 개시의 시점과 장소, 손해의 형태 및 기타 개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제2항 개별사례의 여건에 대한 사정이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할 때, 단지 한 사업장이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하다면 추정은 효력이 없다.

대표적으로 토양환경보존법 제10조의 3의 제2항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연대책임의 예외로써 책임감경

책임오염원의 경합과 관여로 인한 환경손해에 관해서 그 손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법과 달리 일본민법 제719조는 특칙을 두어 손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연대책임을 감경시키고 있다. 복수시설보유자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독일의 환경책임법이 관련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데 반해서 그 특별책임 환경 규정은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입법의 큰 특징이다. 일본대기오염방지법 제25조의 2⁶⁴⁾는 복수사업자의 오염물질의 배출로 생명, 신체가 침해된 경우 일본 민법 제719조 제1항(객관적공동설의 의미)에 의해 연대책임⁶⁵⁾에 대한 특칙으로 기여도가 현저하게 적은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그 정도에 따라 감경시킨다.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기여도가 큰 자와 현저하게 적은 자가 병존하는 경우⁶⁶⁾에 현저하게 적은 기여도라는 것은 한 자리 수 정도의 퍼센트를 말한다.⁶⁷⁾ 책임감경을 인정할 이유로써 공

64) 일본 대기오염방지법 제25조의 2-전조 제1항의 손해가 2인 이상의 사업자의 건강피해물질의 대기 중으로의 배출에 의해 발생한 당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민법 제719조 제1항이 적용된 경우에 당해 손해발생에 그 원인이 되는 정도가 현저하게 적게 인정되는 사업자가 있는 때 법원은 그 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그 사정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

65) 船後正道, 前掲書, 119頁-120頁, 123頁-124頁; 參議院特別委員會會議錄, 21号, 12頁, 24号, 3頁. 입법자는 본조에 관해 민법 제719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만으로 성립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르면 「손해가 2인 이상의 사업자의 건강피해물질의 대기 중으로의 배출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서로 다른 지역의 매연이 혼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민법 제7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66) 船後正道, 前掲書, 126頁.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본조의 적용이 없다.

동불법행위자 각자가 손해액 전액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 때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하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다. 특히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손해발생에 기여도가 현저히 적은 중소기업에 까지 전액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⁶⁸⁾ 기여도가 현저하게 적은 오염원의 공해무과실책임을 책임감경을 예정하는 점에서 입법 후 학설, 판례는 복수오염원의 경합, 관여의 경우 책임감경을 하고 있다. 즉 유력설은 복수불법행위 책임경합시 공동경합·불법행위제도 하의 제한 책임에 의해 해결하거나(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일부 연대책임과 경합불법행위에 의한 분할책임), 복수오염원의 경합으로 해결한다.⁶⁹⁾ 한편 복수오염원에 의한 환경손해의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에 따른 연대책임 하의 자기과실책임은 손해의 일부 밖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증명에 의해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⁷⁰⁾ 최근 일본의 대기오염공해소송에 있어서 재판상 공동불법행위와 무관한 복수의 오염원의 책임범위를 기여도에 따라 분리하고 있다.⁷¹⁾

67) 船後正道, 前掲書, 124頁.

68) 船後正道, 前掲書, 118頁, 126頁; 參議院特別委員會會議錄, 24号, 13頁. 일본 광업법상 무과실책임 규정의 부재는 그 공해가 독자성을 띠면서 장소가 광범위하고 그 원인자가 많기 때문이다.

69) 복수오염원의 경합에 의한 환경손해는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일부연대책임과 경합불법행위에 의한 분할책임이 적용된다. 川井健, 「共同不法行爲-公害を中心として」, 現代不法行爲法研究, 日本評論社, 1978, 280頁; 能見善久, 共同不法行爲責任の基礎的考察(八-完), 法協 102卷 12号, 1985, 2200頁, 2208頁; 집합적 단독불법행위의 특별구성에 의한 복수오염원의 분할책임론-前田達明, 不法行爲歸責論, 創文社, 1978, 298頁-300頁; 民法 8-2(不法行爲法), 青林書院, 1980, 194頁-195頁; 大塚直, 原因競合による割合的責任論に關する基礎的考察をとして, 星野英一古稀記念 日本民法學の形成と課題 下, 有斐閣, 1996, 890頁-891頁; 伊藤進, 公害の私法的救済と共同不法行爲理論-複數加害者の場合の理論構成のための若干の考察, 不法行爲法の現代的課題, 総合勞動研究所, 1980, 186頁-192頁.

70) 淡路剛久, 前掲書, 公害賠償, 133頁; 幾代通, 共同不法行爲について, 民法研究ノート, 有斐閣, 1986, 258頁-259頁. 인과관계의 부존재 입증의 전제로서 복수오염원에 의한 환경손해는 각기 다른 원인자의 점증으로 인해 각 오염원이 반드시 전체의 손해와 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71) 大阪地判 平成 3年 3月 29日 判時 1383号 22頁(西淀川大氣汚染公害 第1次訴訟); 岡山地判 平成 6年 3月 23日 判時 1494号 3頁(倉敷大氣汚染公害訴訟); 名古屋地判 平成 12年 11月 27日 判時 1746号 3頁(名古屋南部大氣汚染公害訴訟). 이들 피고기업들과 더불어 중소공장, 사업장,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킨 경우(도시형 복합대기오염) 일본민법 제719조 제1항 전단과 후단에 의해 피고기업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피고기업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의 기여부분으로 제한했다. 大阪地判 平成 7年 7月 5日 判時 1538号 17頁(西淀川大氣汚染公害 第2-4次訴訟). 이 소송에서 간선도로 주변주민의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해서 도로공사의 영조물책임의 범위를 주변지역

3. 분할책임에 의한 책임제한

복수오염원의 경합에 의한 환경손해에 관해서 귀책원인의 경합의 일반적 취급⁷²⁾ 으로부터 서로 다른 특별책임의 감경을 도입하는 한 환경위험책임이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은 환경위험책임의 이념적 책임내용과 일치한다. 위험책임일반의 환경손해는 다수의 오염원이 소량, 계속적으로 방출되면 방출물질의 누적으로 인하여 법익침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위험책임의 기반인 특별환경위험은 본래 개개 오염원의 방출물질보다도 다수 오염원의 방출물질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복수의 귀책원인의 경합에 관한 책임법의 일반적 취급을 초월하여 복수위험원의 분할책임이라는 특별책임이 필요하게 된다. 내용상 책임감경의 타당범위를 복수의 오염원으로부터 방출물질이 경합된 경우 각 오염원의 방출물질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분할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V. 인과관계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건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환경오염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현재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경오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⁷³⁾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침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

의 대기오염에 기여한 부분으로 제한했다.

72) 복수 자동차의 충돌사례와 같은 복수불법행위의 단순한 경합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73) 오석락, 「입증책임론」, 일신사, 1977, 163면; 김홍규,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상의 제문제”, 「법과 환경」, 한국법학교수회 편, 1977, 181면-182면; 권용우, 「민법학논고」, 신양사, 2002, 317면; 대법원 2002. 10. 22. 선고2000다65666, 65673판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등 참조.

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로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에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1. 개연성이론

개연성이론의 법리적 구성에 있어서 사실상추정설과 증거우월설이 있다.

(1) 사실상 추정설

환경오염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은 필요치 않고 상당정도의 개연성을 입증하면 족하고 가해자는 반증을 제시하는 정도에 한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의 개연성의 증명이 있으면 자유심증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관계의 존재가 사실상 추정된다.⁷⁴⁾ 이 설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실의 추정에 그치는 것이며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문제로 되기 때문에 법관에게 일정한 사실인정에 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2) 증거우월론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이라 함은 증인의 수나 증거의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법원을 확신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증거의 우월과 같은 의미로 '보다 고도의 증거(greater weight of the evidence)' 또는 양자를 합친 것을 말

74) 김현태, "공해와 그 사법적 구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고려대법률행정론집」 제11집, 1972, 254면; 오석락, 전거서, 165면-167면; 전창조,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출판부, 1974, 131면.

한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정도이면 엄격한 증거가 없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의 증명, 즉 반증은 상대방이 하여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⁵⁾

대법원 72다1174 판결은 공해사건에서 피고 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분출 확산되는 이황산가스로서 인하여 원고 소유 과수의 수세가 악화되어 결실의 불량 저하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개연성이론을 받아들였다.⁷⁶⁾ 개연성이론은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증명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Beweismaßreduktion)하는 반면에 가해자의 증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⁷⁷⁾

2. 판례

최근 인과관계에 관련된 이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개연성설에 의하여 주장되어 왔던 피해자의 증명책임의 부담경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첫째, 환경소송에 간접반증을 도입함으로써 가해자의 증명책임을 가중하고 둘째, 법원의 경험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특징이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행한 간접사실의 증명을 뒤흔들만한 반증을 하거나 혹은 다른 간접사실을 증명하여야 비로소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가해자의 반증이 없는 한 피해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로부터 인과관계를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

75) 권용우, 전거서, 321면 참조.

76)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174 판결.

77)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174 판결;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919 판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대법원 81다558 판결은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사건에서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 중 일부가 유류를 통하여 이 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함으로써 함의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 피고 공장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가 (1)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1범위 내에 속)로 함의 사실을 반증손해간의 인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미평하다고 판시하였다.⁷⁸⁾ 한편 대법원 2000다65666, 65673 판결에 의하면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는 해류를 따라 밀물시에 하루 6시간씩 김양식어장에 유입되어 해수온도를 상승시켰고, 그로 인하여 수온상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피고들의 김수확량이 현격히 감소된 것으로서 원고의 온배수 배출과 피고들의 1993년산 김수확량의 감소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원고는 위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반증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⁷⁹⁾ 그리고 대법원 2003다2123 판결에 의하면 여천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재첩 양식장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위 공장들이 반증으로 그 폐수 중에 재첩 양식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또는 재첩 양식장의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⁸⁰⁾

이와 같이 대법원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개연성이론, 간접증명 또는 증명책임의 전환을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 내지 경감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 인과관계의 인정을 자유심증 문제로 다루면서 ‘일응 충분한 증명’ 또는 ‘표현증명’의 이론에 의하여 피해자의 증명부담의 완화를 꾀하려고 하는 일응 추정설과 위험책임설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78)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79)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

80)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3. 소결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불법행위 요건이 갖추어질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고도의 주의의무, 과실의 추정 등의 법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가해자의 과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 이론은 실질적으로 인과관계의 추정 내지 증명책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해자에게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사실의 증명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경침해에 대하여 구체적 증명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단순한 증명책임의 전환을 넘어 인과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증이 성공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준수 불가능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⁸¹⁾

VI. 손해배상범위와 소멸시효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위험책임으로 일부 특별법은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 제763조의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는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는 1원자력사고마다 3억 계산단위의 한도 안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나, 신체상해, 질병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그 책임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총톤

81) Deutsch, *Allgemeines Haftungsrecht*, 2. Aufl., 1995, Rdnr. 214; Esser, *Grundlagen und Entwicklung der Gefährdungshaftung*, 2. Aufl., 1969, S. 71.

수 5천 톤 이하의 유조선: 451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5천 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5천 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유류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II. 결어

화학물질시설을 필요에 따라 정비하고 가동시 주의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대량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장시설 가동시 발생하는 매연, 폐수를 계획에 따라 소량으로 계속 배출하고 사전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배출물질이 사전예측의 범위를 넘어 누적되어 환경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동안 환경오염으로 인한 과실책임에 대한 예외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여 왔다.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입법의 적용, 활용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원칙에 따라 과실책임에 의하여 해결해 왔다.

위험책임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가동 수단과 에너지원의 위험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시설 또는 유체적 위험원에 있어서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책임으로 과실책임과 대비된다. 위험책임에 의하면 시설의 가동 또는 물건의 점유에 결합하고 있는 특별위험에 대해서 시설보유자, 물건점유자가 개별사건에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귀책된다. 이러한 위험책임은 독자적인 귀책원리에 따라 독자의 과제영역을 규율하는 책임유형으로써 책임법상 과실책임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위험책임구성요건은 「시설」에 연결되어 있다. 입법자는 구체적 규율내용의 차원에서 시설위험책임의 내용을 그대로 위험책임요건으로 구성하였다.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는 위험책임의 전통적 대상으로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의 내용을 이룰 수 있고, 정상가동, 가동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 또한 그 환경위험의 독자적인

내용을 이룰 수 있다. 환경위험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과실책임원칙의 예외라는 소극성을 극복하고 과실책임과 대등한 지위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을 이념적 책임내용, 귀책구조에 의한 입법론이 가능하다.

논문발표일 : 2010. 7. 23.	심사일 : 2010. 8. 9.	게재확정일 : 2010. 8. 20.
----------------------	-------------------	----------------------

참고문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 권성 외 4인 공저, 「가처분의 연구」, 박영사, 1995.
-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 김중환, 「채권각론(민법강의 IV)」, 박영사, 1989.
- 김형배, 「채권각론(민법요점강의 IV)」, 신조사, 1996.
- _____, 「위험책임론」,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민법전 시행 30주년 기념논문집, 1993.
-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07.
- 구연창,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 「서울대 법학」, 제22권 제2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81. 9.
- 나운수,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 「상사법학」, 창간호, 상사법연구회, 1994.
- 박원선, 「공해와 법적 규제」, 대한민국 학술원 공해문제연구회, 1971.
- 손윤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 윤용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4.
- 윤진수,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여부」, 「판례월보」, 판례월보사, 1996.
-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법조」, 제52권 제8호, 법조협회, 2003.
- 이명갑, 「과실개념에 대한 판례, 학설의 진전과 변용」, 「대한변호사협회지」, 133호, 대한변호사협회, 1987.
- 이용우, 「공해방지소송」, 「공해문제와 재판」, 재판자료 제2집, 법원행정처, 1979.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 임정평,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해에 대한 소고」, 안이준 박사 회갑논문집, 박영사, 1986.
- _____,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고찰」, 「법정고시」, 1997.

- 정기용, “불법행위법상 과실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법조』, 제34권 제3호, 법조협회, 1985.
-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 황적인, 「현대민법론 IV」, 박영사, 1987.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 홍천룡,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제14권, 한국환경법학회, 1992.
- Deutsch, Haftungsrecht I, 1976.
- Diederichsen, Bitburger Gespräche, Jahrbuch 1989.
- Günter Hager, Der Vorschlag einer europäischen Richtlinie zur Umwelthaftung, JZ 2002.
- Feldmann, Umwelthaftung aus umweltpolitischer Sicht, URP 1991.
- Kötz/Wagner, Deliktsrecht, 9. Auflage, 2001.
- Landsberg-Lülling, UmweltHR, 1991, §1 Rdnr. 117.
- Rabel, Die Grundzüge des Rechts der unerlaubten Handlungen, in: Deutsche Landesreferate zum 1. Internationalen Kongreß für Rechtsvergleichung, 1932.
- Rehbinder, Towards a Community Liability Regime; The Commission's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Liability, 3. Env. Liability, 2000.
- _____, Fortentwicklung des Umwelthaftungsrechts, Natur&Recht 89,
- Schmidt-Salzer, Das UmwelthaftungsG, 1991.
- 野村豊弘, 國道 43号線訴訟上告審判決, 別冊 ジュリスト171号-環境法判例百選, 有斐閣, 2004.
- 三ヶ月章/中野貞一郎/竹下守夫 編, 新版 民事訴訟法演習 2-松浦馨, 差止請求の強制執行-, 有斐閣, 1983.
- 竹下守夫, 生活妨害の差止と強制執行・再論, 判タ 428号, 1981.

- 森島昭夫, 横田基地騒音公害控訴判例法, シュリスト, 第895號, 1987.
- 大塚直, 環境法, 有斐閣, 2006.
- _____, 環境權, 法教 171号, 1994.
- 澤井裕, 公害の私法的研究, 一粒社, 1969.
- _____,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について, 西原道雄 外編 現代損害賠償法講座 5 公害生活妨害, 日本評論社, 1973.
- _____, 公害差止の法理, 日本評論社, 1980.
- 橋本佳幸, 責任法の多元的構造, 東京: 有斐閣, 2006.
- 船後正道, 逐條解説 公害に係る無過失損害賠償責任法—大氣汚染防止法及び水質汚濁止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帝國地方行政學會, 1972.
- 公害法研究會, 公害事業者責任法の提案, シュリ 494号, 1971.
- 加藤一郎 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岩波書店, 1970.
- _____,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 現代法 ジャーナル創刊号, 1972.
- _____, 不法行爲, 増補版, 有斐閣, 1985.
- 淡路剛久,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 公害賠償の理論, 有斐閣, 増補版, 1978.
- 牛山積,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法案要綱の問題點, 公害裁判の展開と法理論, 日本評論社, 1976.
- _____, 現代の妨害法, 勁草書房, 第2版, 1991.
- 富井利安, 無過失責任立論の沿革と公害賠償責任法, 公害賠償責任の研究, 日本評論社, 1986.
- 吉村良一, 不法行爲法, 有斐閣, 第3版, 2005.
- 浦川道太郎, 無過失損害賠償責任, 星野英一 外編, 民法講座 6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有斐閣, 1986.
- 四宮和夫, 不法行爲, 青林書院, 1983.
- 錦織成史, 不可抗力と避けることのできない外的事實—危険責任の免責事由に関する一考察, 論叢, 1982.
- 平野裕之, 逐條民事特別法講座 ⑧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I, ぎょうせい, 1995.
- 赤倉啓之=太田義武, 解説 公害の無過失責任, 第一法規出版, 1972.

[Zusammenfassung]

Die Haftungsstruktur der wegen Umweltverletzung
Gefährdungshaftung

Lee, Seung Woo

Das Umwelthaftungsgesetz gewährt für Schäden aus Tötung, Körperverletzung oder Sachbeschädigung infolge einer Umwelteinwirkung Schadensersatzansprüche. Es verwendet das bekannte haftungsrechtliche Junctim von Verletzung und Schaden. Damit ersreckt sich der Schutz auf besonderes zugewiesene Rechtsgüter individueller Art. Die Umwelthaftung entfällt nicht deswegen, weil die erforderliche Sorgfalt eingehalten worden ist. Auch der höchste Grad einer Sorgfalt führt nicht zum Fortfall der Haftung. Ebenso wenig entschuldigt, dass der Stand der Technik eingehalten worden ist, sei es, dass die Verletzungsmöglichkeit nach dem Stand der Technik nicht erkennbar war, sei es, dass der Stand der Technik die Verletzung nicht ausgeschlossen hätte. Für den Umwelthaftung standen Unrechtshaftung, Gefährdungshaftung und Aufopferungshaftung zur Verfügung. Eine objektive,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die sich auf das Prinzip des Einstehens für übermäßige Gefahr zurückführen läßt, bezeichnen wir als Gefährdungshaftung.

Für die Kausalhaftung sind Ursachenvermutungen unmittelbar haftungsbegründend. Aus diesem Grunde bildet die eingehende Regelung der Ursachenvermutung in Umwelthaftungsgesetz eine Haftungsvermutung. Es ist anerkannt, dass die Verschuldensvermutungen die Haftung verobjektivieren. Diese Tatbestände enthalten keine Gefährdungshaftung, sondern schließen an eine kontrollierte Gefahr die Umkehr der Beweislast hinsichtlich des Verschuldens an. Grundsätzlich trägt zwar der Anspruchsteller die Beweislast dafür, dass die Verletzung des Schutzgesetzes zu dem Schaden geführt hat, dessen Ersatz verlangt wird. Wenn jedoch der Schaden im Verhinderungsbereich oder im Schutzbereich des Schutzgesetzes liegt, kommt man beweismäßig dem Verletzten entgegen.

Nach der Regelung haften die kumulativ Kausalen, also diejenigen, die Verletzung und Schaden voll und ganz verursacht haben können. Leiten also mehrere Anlagen umweltbeeinträchtigende Stoffe ab, von denen schon die Einlagerung eines Betriebs zur Verletzung und Schadensentstehung genügt hätte, so haften alle als Gesamtschuldner.

주 제 어 무과실책임, 환경책임, 인과관계, 위험책임, 증명책임

Key Words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Umwelthaftung, Kausalität, Gefährdungshaftung, Beweislast